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2년 04월 05일

광고2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 조치 사항 직권 조치 일자
손 *호	손 *호 1981-04-09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호수공원로 (하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04-05
손 *호	김 *슬 1986-12-13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호수공원로 (하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04-05